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3

제출년월일 : '96. 11. .
제 안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96. 7. 1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15100호)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점용료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징수제외하는 소액점용료 산정 금액에 있어 종전에는 500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5천원 미만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조)

○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단위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함.(예 : 1,950원 → 1,900원)

○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있어서 수도관, 하수도관 등 관의 종류를 당초에 ①직경 0.1m 이하 ② 직경 0.1m초과 0.2m이하 ③ 직경 0.2m초과 0.4m이하 ④ 0.4m초과 0.6m이하 ⑤ 직경 0.6m초과 0.8m이하 ⑥ 직경 0.8m초과 1.0m이하 ⑦ 직경 1.0m초과로 7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⑦ 직경 1.0m초과분을 ⑦ 직경 1.0m초과 2.0m이하 ⑧ 직경 2.0m초과 3.0m이하 ⑨ 직경 3.0m초과로 세분하여 9단계로 변경 함.(안 제3조)

□ 참고사항

○ 참고법령

o 도로법시행령제4조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명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를 "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으로 하며 동조 제1항중 "500원"을 "5천원"으로 하고 "징수"를 "부과"로 한다.

제5조제1항의제1호내지 제2호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제1호중 "건설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명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점용료의 부과징수" 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점용료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기준에 의한다" 를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의한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분은 허가 하는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 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제1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1의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전기통신관. 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직경 0.1미터 이하	길 이 1 미터	1 년	150
		직경 0.1미터 초과 직경 0.2미터 이하			300
		직경 0.2미터 초과 직경 0.4미터 이하			600
		직경 0.4미터 초과 직경 0.6미터 이하			900
		직경 0.6미터 초과 직경 0.8미터 이하			1,200
		직경 0.8미터 초과 직경 1.0미터 이하			1,500
		직경 1.0미터 초과 직경 2.0미터 이하			2,250
		직경 2.0미터 초과 직경 3.0미터 이하			3,750
		직경 3.0미터 초과			5,250
	기타의 관	직경 0.1미터 이하	길 이 1 미터	1 년	200
		직경 0.1미터 초과 직경 0.2미터 이하			450
		직경 0.2미터 초과 직경 0.4미터 이하			900
		직경 0.4미터 초과 직경 0.6미터 이하			1,350
		직경 0.6미터 초과 직경 0.8미터 이하			1,800
		직경 0.8미터 초과 직경 1.0미터 이하			2,250
		직경 1.0미터 초과 직경 2.0미터 이하			3,350
		직경 2.0미터 초과 직경 3.0미터 이하			5,600
		직경 3.0미터 초과			7,850

별표1의 비고란 제1호중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지가를 말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동란 제4호중 "합계"를 삭제하고 동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5호의 2 및 제5호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 → 1,900원)

5의 2.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기능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5의 3.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 징수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5천원----------부과------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생략)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1. ----------건설교통부령-------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 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건설교통부령----------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3. ----------건설교통부령-----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1. ---------건설표준품셈----------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법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삭제)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삭제)
	②제1항에 의한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신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하는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신설)	3.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징수)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수수료의징수)①법제7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 ---------- 건설교통부령 ----------

현 행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금액 : 원)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면적	기간단위	
1.(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것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직경0.1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50
		직경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300
		직경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600
		직경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900
		직경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200
		직경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500
		직경1.0미터초과			2250
		(신설)			
		(신설)			
	기타의 관	직경0.1미터이하			200
		직경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450
		직경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900
		직경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1350
		직경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직경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2250
		직경1.0미터초과			4500
		(신설)			
		(신설)			
4~10 (생략) (생략)	(생 략)				

개 정 (안)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제3조관련)

(금액 : 원)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면적	기간단위	
1.(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좌동	좌동	좌동
2.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직경0.1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50
		직경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300
		직경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600
		직경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900
		직경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200
		직경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500
		직경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2250
		직경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3750
		직경3.0미터초과			5250
	기타의 관	직경0.1미터이하			200
		직경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450
		직경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900
		직경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1350
		직경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직경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2250
		직경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3350
		직경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5600
		직경3.0미터초과			7850
4~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 비고	※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1.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위한 개별공시지가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합계면적----------	4. ----------면적--------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예 : 1,445원→ 1,400원, 1,955원 → 1,950원)	5. ----------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 → 1,900원)
(신설)	5의2.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으로 한다.
(신설)	5의3.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등이 포함된다. 이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